

# 유럽의 사용자 단체 III

- NEPA 활동 내용 및 역할
- 의제 및 현안의 변화 동향
- 사용자 대표권을 둘러싼 논의
- 종합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EIRO)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국가들에서는 사용자 단체가 노동조합과 정부와 더불어 각 국가의 단체교섭제도를 둘러싼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사용자 단체의 조직과 역할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i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이 2004년 EIROOnline 웹사이트에 발표한 비교연구 분석자료인 『유럽의 사용자단체(Employers' Organisations in Europe)』를 번역한 글이며(원문은 <http://www.eiro.eurofound.eu.int/2003/11/study/tn0311101s.html> 참고), 총 3회 중 마지막 부분이다.

## ■ NEPA의 활동 내용 및 역할

NEPA(National Employer Peak Association)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광범위하다. 전체 NEPA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핵심 사안들이 다소 있으며 일부 단체들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범위의 추가적인 업무가 있다. 전체적으로 NEPA의 활동 영역은 거의 20개에 이르는 업무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모든 국가들의 NEPA가 추구하는 3대 핵심 활동은 아래와 같다.

-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NEPA는 양자간, 삼자간 '정책 협의(corporatist institution)'에 참여한다.
- 모든 NEPA는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로비 활동을 한다.

-룩셈부르크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NEPA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직접 산업 단체와 직접 교섭하는 방법이나 회원의 교섭 활동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교섭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NEPA와 그 회원인 사용자 단체간의 역할 배분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의 성격상, 사용자 단체인 동시에 무역협회인 이중 단체는 순수 사용자 단체보다 광범위한 업무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EPA의 활동 범위는 NEPA와 그 회원 사용자 조직 사이의 역할 배분과 책임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 단체교섭권

NEPA와 그 회원 단체의 단체교섭 관계는 다양한 조직 규정상에 명시된 조항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힘의 균형, 정보 접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절차 및 서로 다른 계층에 위치한 각 사용자 단체간의 비공식적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비공식적인 관행을 분석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내용에서는 NEPA와 그 회원의 공식적인 권리만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개국 중 10개국(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NEPA의 회원인 사용자 단체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어 NEPA의 회원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대표권은 NEPA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원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이 NEPA 차원이 아닌 회원 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NEPA가 회원 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NEPA 대부분은 산별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회원들간에 교섭된 협의 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단, 종종 예외가 발생하기도 한다). 핀란드의 TT의 회원은 단체교섭 현안과 관련된 정보를 최상위 단체인 TT에 알릴 의무를 지니지만, TT 자체적으로는 공식적인 교섭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TT가 서명한 협약은 단지 제안(recommendation)에 그칠 뿐 실제로 구속력을 갖는 협약의 서명 당사자는 소속 단체들이다. 그러나, 회원 단체들이 직장 폐쇄(lock-out)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TT의 승인을

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TT는 직장폐쇄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WKÖ가 ‘보조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남다른데, 이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회원사들이 속한 단체가 해당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대부분 WKÖ의 소속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국가(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및 슬로베니아)의 경우 NEPA가 회원 단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식적 권한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소속 회원 단체들이 추구해야 할 일정한 교섭 목표를 설정하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NHO는 소속 회원들이 체결하는 모든 협약의 서명 당사자이며 중앙분쟁 해결기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소속 단체들은 NHO의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산업 분규 행위를 실행을 옮길 수 없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NEPA는 직접 회원사들을 조직화하고 있어 하위 단체인 사용자 단체들과 권한이나 의무 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반면, 그리스의 Federation of Greek Industries(SEV)는 산별단체협약을 직접 체결하고 소속 회원 단체들을 동 협약 아래 구속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NEPA와 그 소속 단체간의 권한과 역량 배분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이 설정되고 모색되는지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며 일부의 경우 비공식적인 산업 부문별 행동 양식들 역시 최상위 단체들과 각각의 소속 단체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NEPA가 그 소속 회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공식적인 권한은 다소 미미하지만, NEPA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효과적인 ‘비공식적인(soft)’ 조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법정 협의기구 활동에 참여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법정 협의기구(statutory bodies)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체는 NEPA의 소속 단체가 아닌 NEPA이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개국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 사용자 단체들은 이와 같은 협의기구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협의기구 참여의 주체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주로 NEPA에 사용자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의 공식적인 대표자 자격이라기보다는 개인(competent individuals) 자격으로 선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각 고용 당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법정 협의기구는 노사 쌍방간 협의기구, 삼자간 협의기구 혹은 보다 많은 당사자를 두는 협의기구일 수 있다. 동 기구는 권고, 협의 혹은 교섭/표준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벨기에의 전국노동위원회(CNT/NAR), 그리스의 경제사회위원회(OKE), 헝가리의 국가이해조정위원회(OÉT), 이탈리아의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SER)와 노동재단(Labour Foundation)의 경우에는 협의 의제는 사회 일반적인 사항으로 확대된다. 이와는 달리 협의 사항이 특정 영역으로 한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보장, 핀란드, 노르웨이는 임금정책,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는 교섭/산별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현안이 협의된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NEPA는 다양한 범위의 경제 및 사회생활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NEPA가 이와 같은 협의기구의 참여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2001년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회보장 기금 단체의 직접 운영권을 포기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곧 이어 중소기업연맹(CGPME)이 MEDEF를 뒤따랐다. 1990년대에는 스웨덴경총(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의 전신이었던 한 경영자 단체가 소위 ‘과도한 협의주의(excessive corporatism)’로 간주되는 행동 양식을 일소하기 위한 노력하에 여러 위원회와 여타 정부 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EPA의 수많은 임원들이 이와 같은 기구들의 대표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용자 전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차원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유럽 차원에서의 조정 역할

유럽 차원에서 NEPA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방식은 해당 현안이 일반적인 사항일 경우 유럽사용자단체연맹(UNICE)의 소속 단체로서 동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부문과 관련된 특정 현안일 경우 유럽중소기업협의회(UEAPME) 소속 단체로서 동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해당 산업 부문별 활동 영역을 가지는 NEPA의 경우 해당 산업 부문과 관련된 유럽사용자단체의 회원으로서 종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통합의 결과로서 일부 NEPA는 유럽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특히 브뤼셀에

[표 1] 국가별 NEPA가 참여하는 법정기구

국가	최상위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기구
오스트리아	다양한 법적 노사정 '삼자협의(coporatist)' 위원회
벨기에	전국노동위원회(Conseil National du Travail/Nationale Arbeidsraad, CNT/NAR) 및 산별 단위와 지역 단위의 기구
덴마크	덴마크사용자연합(DA): 노동부 산하 26개 법정기구 덴마크농업사용자연합(SALA): 여러 부처 산하 27개 위원회 덴마크금융사용자연합(FA): 금융산업 관련 여러 위원회
핀란드	경제위원회(Talousneuvosto); 소득정책결정위원회(Tulopoliittinen selvitystoimikunta). 핀란드사용자연합(TT): 300여개 관련 기구에 참여 핀란드서비스산업사용자연합(PT): 250여개 관련 기구에 참여
프랑스	전국상공업고용조합(UNEDIC)에서 노사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실업보험기금 장인사용자연합(UPA): 사회보장기금 운영기구
독일	단체협약연장을위한균형위원회(Ausschuss zur Allgemeinverbindlichkeit von Tarifverträgen); 3개 사회보장제도의 경영이사회 노동법원 및 대중매체(Rundfunkrat)에서 사용자 대표로 참여
그리스	경쟁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에너지규제기구; 최고노동위원회; 노동검사관; 경제사회위원회(OKE); 조정및중재서비스(OMED); 사회보험재단(IKA); 노동력고용기구(OAED); 근로자복지재단(OEE); 근로자주거기구(OEK); 를 비롯 여러 부처 단위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
헝가리	전국이해조정위원회(Országos Érdekegyeztető Tanács, OÉT).
아일랜드	아일랜드경영자연합(IBEC): 노사관계위원회(LRC); 공동노동위원회(JLC);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 국가경제사회포럼(NESF); 파트너십과 성과를 위한 국가센터(NCPP) 등을 비롯해 노동법원 및 80여개 기타 기구와 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표함 아일랜드경총(CCI): NESC와 NESF
이탈리아	국가경제노동위원회(Consiglio Nazionale dell'Economia e del Lavoro, Cnel); 사회보장이사회; 정부 부처 차원의 자문위원회
룩셈부르크	노사정조정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 tripartite); 경제사회위원회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신용과 투자를 위한 국가기구(Société nationale de Crédit et d'Investissement); 전국조정청(Office National de Conciliation).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ociaal-Economische Raad, SER); 노동재단(Stichting van de Arbeid, STAR) 등 다양한 기구에서 활동
노르웨이	임금결정을 위한 전문계량위원회(Teknisk Beregningsutvalg for Inntektsoppgjørene, TBU); 임금정책에 관한 교섭위원회 (Regjeringens kontaktutvalg for inntektsoppgjørene); 전국임금위원회 (Rikslønnsnemnda) 등 여러 가지 기구에서 활동
포르투갈	포르투갈농업사용자연합(CAP), 포르투갈산업연맹(CIP), 포르투갈서비스산업사용자연합(CCP), 포르투갈관광산업연맹(CTP); 경제사회위원회 (Conselho Económico e Social, CES); 사회적 협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Comissão Permanente de Concertação Social, CPCS).
슬로베니아	경제사회위원회(Ekonomsko socialni svet Slovenije, ESSS); 고용청 경영이사회; 연금 및 장애보험청의 총회; 건강보험청의 총회; EU-Slovenia 공동자문위원회; ICC-Slovenia 집행위원회; 대중매체위원회(Radio and Television Board)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Consejo Económico y Social, CES); 국가고용기구(Instituto Nacional de Empleo, INEM); 연방평생교육위원회(Comisión Estatal para la Formación Continua, CEFC) 등을 비롯 40여 개의 국가 단위 위원회와 기구에서 사용자 대표로 활동
스웨덴	노동법원; 중재 과정 및 산재 관련 이슈결정에 참여 근로시간위원회를 비롯 다양한 공공위원회에 참여
영국	개별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LPC), 학습 및 숙련위원회(LSC), 산업안전보건청(HSE)에 참여하지만 공식적인 사용자 대표의 형태는 아님.

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고 단위 사용자단체인 NEPA의 정부기구 참여의 사례가 이 표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표에는 NEPA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들만 추려서 표시했음을 알려둠.

\*\* 특별히 NEPA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는 모든 NPEA가 아니라 특정 NPEA만이 해당 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임.

자료: EIRO.

위치한 연락 사무소를 통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견 기업 및 대기업 사용자 단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유럽 차원에서 사용자들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활동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단, 헝가리의 경우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1999년 1월 EU 및 유럽과 국제적인 경제 단체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아래 모든 NEPA들이 참여하여 「국제협력력을 위한 헝가리사용자기구(CEHIC)」를 결성하였다.

### 의제 및 현안의 변화 추이

최근 들어 사용자 단체의 활동이 유럽 지역 차원에서 조정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조정되는 현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수의 NEPA들은 자국 내에서조차 EU 차원의 현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스웨덴경총(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은 2003년 총선을 통해 EU 경제통합연맹의 회원 가입을 지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오스트리아와 영국 등 일부 여타 국가들에서도 사용자 단체들은 EU 현안과 관련한 정치적 로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 사용자 단체들은 단체교섭과 관련된 의제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4개국(덴마크, 헝가리, 스웨덴, 영국)의 경우, NEPA와 그 회원들은 최근 수 십년 동안 상당한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겪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다자간 사용자 단체교섭이 그 자취를 감추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이후 여타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덴마크에서는 상당한 단체교섭 활동이 과거 범산업 교섭 활동으로부터 개별 산

별 교섭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특히 덴마크산업연맹(DI)을 중심으로 각 산별로 체결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는 ‘중앙집권화된 분권화(centralized decentralization)’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덴마크사용자연합(DA)이 과거 보유하고 있었던 재정적인 자원이 소속 회원 단체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산업 부문간 사용자 단체들간의 거대한 통합 현상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1999년 DA와 덴마크노총(LO)간에 체결된 ‘기후 협약(climate agreement)’은 이와 같은 중앙집권화된 단체의 영향을 재연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DA와 LO는 단체교섭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단체교섭 당사자들이 각 산별 회원 단체임을 다시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DA 회원 단체들은 단체교섭시 구속이 있는 공통 절차를 준수하는 반면, DA가 반드시 회원 단체간에 합의된 협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교섭권이 과거 복수산업 교섭에서 탈피하여 개별 산별 교섭으로 이동하는 유사한 현상이 스웨덴에서도 발생하였다. 1991년 SAF(현재의 스웨덴경총)는 중앙집권화된 단체·임금교섭권을 포기하고 소속 회원 단체에게 동 권리를 양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교섭 분권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산별 단체교섭의 분권화 형식을 통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일부 단체교섭의 조정 역할은 아직도 국가 차원의 삼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EU의 PHARE(동유럽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해당 산별 양자간 사회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추진 노력은 산별 교섭의 하향이라는 현상이 가져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타 국가들의 경우 단체

교섭은 비교적 최근 들어 (다시) 중앙집권화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들어 벨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 차원의 산별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FEB/VBO 사용자 연맹의 역할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졌다. 아일랜드의 경우, IBEC는 점차적으로 일련의 사회적 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s)을 통해 국가 차원의 교섭 기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용자 단체들은 소속 회원 단체들이 단체교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BDA의 여러 소속 단체들은 회원사들에게 'Ohne Tarifbindung(OT)'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에게 소속 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으나 산별 단체협약 결과로 인한 업계 단협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이전부터 사용자 단체들은 일부 소속 회원들을 단체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 사용자 대표권을 둘러싼 논쟁

전체적으로 사용자 단체의 대표권 혹은 사용자 단체의 형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인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 대표의 회원 자격이나 대표권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대상 확대 (즉, 비협약 기관들을 대상으로 협약의 구속력을 확대하는 행위) 사안과 결부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단체협약의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이 입법화되었고 이로 인해 동 협약의 사용자 대표는 최소 해당 산업의 총 근로자의 55~60%를 고용하는 기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어

야 단체협약의 대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은 경직된 노동시장 법칙을 경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용자 단체가 비협약 기관들(중종 신설 기업을 의미하기도 함)을 대상으로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독일에서는 산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 단체와 노동 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독일 의회에서 기독교민주주의노조(CDU)/기독교사회주의노조(CSU) 야당뿐만 아니라 독일산업연맹(BDI)은 일반적인 산별 교섭이 분권화되고 있는 현상과 특히 산별 사용자단체와 기업별 경영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상공회의소(GZS, OZS)의 의무적 회원 가입과 단체교섭시 동 단체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향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에서도 사용자 단체권은 국가 차원의 삼자간 협의체제에 관한 PHARE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별 단체들은 사용자 단체의 분권화 성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표권의 분권화 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 단체들이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산별 단체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 ■ 종합

이 연구는 유럽 지역의 사용자 단체와 관련한 경향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현 상황을 단면도(cross-section)의 형식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규칙적인 패턴이 동 내용을

통해 파악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사용자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NEPA와 그 회원 단체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체교섭과 교섭 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로비 활동을 모색하고 수많은 법정 협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의 대표권은 소속 회원 단체들로 구성되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별 최상위 조직의 연맹(confederations)들은 하부 조직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별로 보면 단일 NEPA만이 존재하는 국가도 있고 7개 이상의 NEPA가 존재하는 국가들도 있어 이와 같은 최상위 단체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사용자 단체의 활동과 구조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간의 경쟁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NEPA의 대표권을 둘러싼 구조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각 단체의 영역이 차별화되어 있어 각 단체간의 경쟁은 제한되고 따라서 분쟁 범위 역시 축소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본 내용은 각국별 사용자 대표 단체의 유형과 그룹을 차별화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별 체계를 특정 측면과 영역, 즉 최상위 대표 조직, 회원 자격의 안정성, 조직적 변화의 유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다수의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거나 다수의 국가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상위 사용자 단체가 하나

만 존재하는 국가들(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간에도 일반적인 회원 추이에서 볼 때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독일과 영국의 사용자 단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회원 단체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회원수가 상당히 높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NEPA의 통합과 신설은 다수의 국가들이 각국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협동적인 성향(즉, 사용자 단체의 가입 의지)은 감소될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국가의 대부분에서는 사용자 단체의 회원 수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 단체를 둘러싼 여론과 관련하여 사용자 대표권에 대해 일반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EU 신규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베니아에서 통합의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슬로베니아에서 '상공회의소'의 의무적 회원 가입이 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원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반면, 양 국가에서 사용자 단체의 자발적 회원 가입 현상은 현재 감소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 단체 대표권의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 단체 경향이 EU의 여타 회원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간의 경쟁 격화로 인해 사용자 단체들은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회원 단체의 활동 영역과 회원 영역 합리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